

인천광역시검단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장
람	



제 22 호

2026. 10. 12.(월)

차 례

공 고

○인천광역시검단구 공고 제372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 1

○인천광역시검단구 공고 제396호 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 9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 10. 12.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1.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 2026년 7월 인천광역시 검단구 출범에 따라 신규 발행되는 ‘검단e음’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의 원활한 유통 및 조기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 카드 발급에 소요되는 실물 제작비 및 발급 수수료를 구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발급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 내 소비 촉진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항목에 ‘카드형 상품권의 발급 제작비 및 발급 수수료 지원’ 신설(안 제28조제4항제6호)
- 종전의 제28조제4항제6호(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를 제7호로 이동(안 제28조제4항제7호)

4.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참조: 경제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2-726-6652, 팩스 032-726-7947)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2026년 7월 인천광역시 검단구 출범에 따라 신규 발행되는 ‘검단e음’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의 원활한 유통 및 조기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 카드 발급에 소요되는 실물 제작비 및 발급 수수료를 구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발급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 내 소비 촉진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항목에 ‘카드형 상품권의 발급 제작비 및 발급 수수료 지원’ 신설(안 제28조제4항제6호)
- 종전의 제28조제4항제6호(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를 제7호로 이동(안 제28조제4항제7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복지정책과와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카드형 상품권의 발급에 따른 제작비 및 발급 수수료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8조(상품권 활성화 시책 및 지원) ① ~ ③ (생략) ④ 구청장은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품권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 5. (생략) <u><신설></u> 6. (생략) ⑤ · ⑥ (생략)	제28조(상품권 활성화 시책 및 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1. ~ 5. (현행과 같음) 6. <u>카드형 상품권의 발급에 따른 제작비 및 발급 수수료 지원</u>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⑤ · ⑥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 발췌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9., 2025. 8. 2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제18조(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행일: 2026. 2. 27.]

의 건 제 출 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 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와 이익 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기타 문제점		
국(군·구)별 의견			
협약개요	국별	제 출 의 건	검 토 내 용

의견제출서		
1. 자치법규명		
2.	성명(단체명/대표자)	
	주 소	
3. 의 견		
4. 기 타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검단구청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에서 시행하는 검단16호공원 특례사업 공동주택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인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26. 8. 28. 수용 재결하고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재결서 정본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2.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1. 사 업 명: 검단16호공원 특례사업 공동주택 진입도로 개설공사
2. 사 업 위 치: 인천광역시 검단구 오류동 산107-4번지 일원
3. 사업 시행자: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4. 재결서 정본 수령장소: 인천광역시 검단구청(도로과)
(주소: 인천광역시 검단구 독정로125번길 12)
5. 공시송달 대상 : 별첨 「공시송달 대상자 목록」 기재와 같음
6. 공시송달 사유 : 수취인 불명 등
7. 공시송달 공고기간 : 2026. 10. 12. ~ 10. 26. (14일 이상, 초일 불산입)
8. 기타

가. 손실보상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3항에 따라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천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없이 같은 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나.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수령 시 청구서 등에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을 수령함」이라고 기재하면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다루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없음

「별첨」 공시송달 대상자 목록

번호	성명	송달주소(최종 확인지)	비고
1	박○주	인천광역시 검단구 원당대로840번길 21, 812동 1001호(당하동, 풀림아이원아파트)	공시송달 대상